의안 번호 1360

#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연월일 : 2017. 5. 31. (수)

나. 제 출 자 : 신성봉외 7명

다. 위원회회부 : 2017. 6. 1.(목)

라. 위원회심사 : 2017. 6. 9.(금)

#### 2. 개정이유

○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.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·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라.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마.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, 교육·홍보,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~제11조)

## 4. 근거법규

○ 건축기본법

#### 5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〈관계법령〉

## □ 건축기본법

**제2조(기본이념)**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- 1. 국민의 안전 ·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
- 2.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
- 3.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.
- 2. "공간환경(空間環境)"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·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.
- 3. "공공공간(公共空間)"이란 가로·공원·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(公衆)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- 4. "건축디자인"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·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5. "품격"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, 규모, 형태, 구조, 재료,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.
- 6. "품질"이란 안전, 보건, 기능, 쾌적,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.
- 7. "건축"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,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7조(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·노약자·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.